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사무원 직원 채용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산재근로자 보상, 의료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사무원	공무직근로자	1명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주요내용
응시자격	- 학력·경력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제22조(정년)1항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60세미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 완료 된 자격에 한함)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 근로조건

구분	주요내용
근로 시간	• 월~금, 주5일 (1일 8시간, 9:00 ~ 18:00) ※ <u>기관장 근무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연(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실시</u>
수행 업무	• 기관장 부속실 관리 업무 • 문서접수 및 기타 사무지원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보수 수준	• 월 2,200천원 수준 (기본급·식대 포함) ※ 세전 기준 ※ 상여금 등 기타 제수당은 공단 보수규정 및 세칙 따름
고용 형태	• 공무원근로자(임용예정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로 평정된 때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 가능
복무 규정 등	• 기타 복무·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등 공단 관련 규정에 따름

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일정 및 주요내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4. 3. 28.(목) ~ '24. 4. 4.(목) 13:00: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recruit_2000@comwel.or.kr)을 통한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마감당일 13:0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처: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9층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별첨 서식 참조]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사무원(지원자명)" 으로 접수(제출 후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전형	• 선발방법 :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 '24. 4. 15.(월) 13: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일시 : '24. 4. 17.(수) ~ '24. 4. 19.(금)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개발계획 등)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균점수 5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항목별 고득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 실시 • 증빙서류 제출 목록 ○(자격사항) 전문자격증, 전산자격증, 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인증서 각 1부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부 ○(산재근로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사본 1부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1부(의사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기),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각 1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외)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최종합격자발표: '24. 4. 24.(수) 13: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합격자 중 서류검증 결과 적격한 자
임용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24. 4. 24.(수) ~ '24. 4. 25.(목) 17:00:00

	•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등록원서(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1부 ○ 각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공정채용 서약 및 친인척 정보신고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렴서약서 및 비위면직자 체크리스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및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예정일 : '24. 4. 29.(월)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
--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별 세부사항

□ 서류전형

항 목	주요내용								
자격사항 (100점)	<table><tr><td>전산자격(35점)</td><td>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워드프로세서1급 포함)</td></tr><tr><td>전문자격(35점)</td><td>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비서 3급 이상</td></tr><tr><td>한국사자격(10점)</td><td>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td></tr><tr><td>국어능력(20점)</td><td>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3급 이상</td></tr></table>	전산자격(35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워드프로세서1급 포함)	전문자격(35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한국사자격(10점)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국어능력(20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3급 이상
	전산자격(35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워드프로세서1급 포함)							
	전문자격(35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한국사자격(10점)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국어능력(20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3급 이상							
※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적용하며 각 평가항목 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 완료 된 자격에 한함)									

□ 서류전형(사회형평우대사항)

항목	주요내용		
우대사항 (5점)	구 분	점 수	우대항목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점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5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5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 이탈주민	5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 여성	5점	• 임신·출산의 사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년 이상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경력단절기간 및 사유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기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항목	주요내용
면접전형 (10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의사소통능력 · 대인관계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직무이해도 · 자기개발계획 등 평가

5. 응시자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접수 마감시간(**2024. 4. 4.(목) 13:00:00**)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정된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불합격)
 -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 최종 합격자에 대한 등록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비위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상설 신고센터) 채용비위 외부익명 신고시스템 상설 운용
 - ※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채용 합격 시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 * 구제 절차
 - 피해자 특정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 피해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 일정, 합격자 발표 및 임용구비서류 등의 사항은 전형별 대상자(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채용담당자(☎02-2230-9504)

2024. 3. 28.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붙임 1] NCS 직무기술서

직무 분야 (직렬)	사무 원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특화분류)
		02.경영·회계·사무	02.총무·인사	03.일반사무	02.사무행정
주요사업	○ 산재고용보험서비스, 사무 업무보조				
직무수행 내용	○ 기관장 부속실 관리 ○ 부서(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 접수 및 관리,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 또는 관리 ○ 기타 소속기관장·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및 서류 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일반요건	○ 무관				
자격요건	기본자격	무관	우대자격	-	
필요 지식	○ 문서양식과 유형, 공지 문서 종류와 기준 ○ 문서대장 관리, 문서기안 절차,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등) ○ 문서작성의 목적, 문서관리 규정 ○ 정보를 비교조사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 회계 규정, 경비처리 지침				
필요 기술	○ 문서편집 능력, 서류함 정리 능력, 문서편철능력, 문서분류능력 ○ 컴퓨터 활용능력,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조작 기능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조작 기능, 업무파악능력, 업무전달능력				
직무수행태도	○ 업무규정 준수, 회계규정 준수, 문서보안 준수, 보안 규정 준수 ○ 요청내용의 적극적 경청 태도, 일정계획 준수 태도, 성실성 ○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태도, 객관적인 자세로 일정을 조정하려는 태도, 고객지향 의지 ○ 개인정보보호법준수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붙임 2] 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12. 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4. 3. 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6. 4. 5., 개정 2018. 5. 11., 2020. 7. 2.>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설 2020. 7. 2.>
-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 4. 5., 개정 2020. 7. 2.>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개정 2014. 6. 20.>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7. 9. 5.>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8. 5. 11.>

[붙임 3] 채용 이의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			
성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5]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장애정도)			면접시험
지체 장애	상지 지체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하지지체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뇌병변 장애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 공통 편의지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	공통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관련자료 서면제공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 검토 후 안내
	임산부		· 높낮이 전용책상 · 전담도우미 지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선택

※ 증빙자료(의사진단서 등)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편의지원 요청내용 검토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안내